



Deloitte Conference

G20 새로운 규제 환경하의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신바젤협약 Pillar 2 / ICAAP을 중심으로

일시 : 2009년 11월 2일 (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공동주최 : 딜로이트 컨설팅, 한국금융리스크협회



초대의 말씀

금융산업의 역사는 새로운 위기의 출현과 극복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이
국제사회와 각국의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합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 체제 강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의 사업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딜로이트 컨설팅과 한국금융리스크협회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신바젤협약의 Pillar 2에 해당하는 리스크 관리 영역과
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규제 환경 하에서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한 찬 희**
한국금융리스크협회 회장 **윤 병 철**

프로그램

1:00 ~ 1:30	등록 및 접수
1:30 ~ 1:40	인사말 : 이정인 (딜로이트 부사장)
1:40 ~ 2:00	주제발표 I. Philip Goeth (딜로이트 AP Partner) Pillar 2 / ICAAP 소개
2:00 ~ 2:40	주제발표 II. Antonio Arfe (딜로이트 Director) 유럽의 Pillar 2 / ICAAP Practice
2:40 ~ 3:40	주제발표 III. Schmid Sandro (딜로이트 Partner) GRRR(Growth, Risk, Returns, Rewards) & 평판, 전략리스크
3:40 ~ 4:00	Coffee Break
4:00 ~ 4:40	주제발표 IV. Andrea Cesaroni (딜로이트 Director) 유동성 리스크 & 거래상대방 리스크
4:40 ~ 5:00	주제발표 V. Willem Kelles (Thomson Reuters) 유동성 리스크 관리 UK Practice
5:00 ~ 5:40	주제발표 VI. 박병수 (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제도실 팀장) 최근 금융위기 하에서 바젤 II (Pillar 1, Pillar 2) 관련 주요 이슈
5:40 ~ 6:00	질의 응답

Deloitte Conference

G20 새로운 규제 환경하의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신바젤협약 Pillar 2 / ICAAP을 중심으로

일 시 : 2009년 11월 2일 (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공동주최 : 딜로이트 컨설팅, 한국금융리스크협회

안내말씀

- 컨퍼런스 참가비는 없으며, 자료집은 당일 배포합니다.
- 남대문 주변은 교통량이 많아 혼잡하오니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신청은 아래 메일 주소로 성함, 소속, 연락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wohur@deloitte.com

Contact Point

컨퍼런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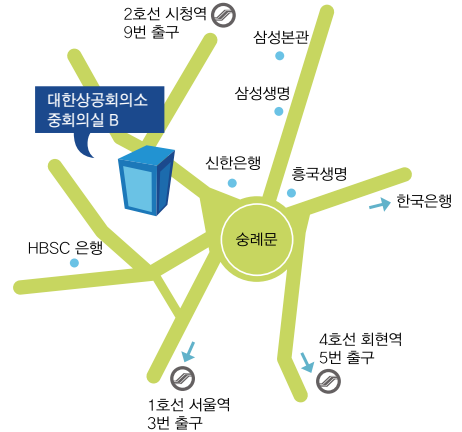
딜로이트 컨설팅 Capital Market and Risk Management

허우성 Senior Manager

(T. 02 - 6676 - 3880, M. 010 - 7152 - 1913, wohur@deloitte.com)

엄윤희 Senior Manager

(T. 02 - 6676 - 3887, M. 010 - 8752 - 3012, yueo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a Swiss Verein, and its network of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y.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legal structu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and its member firms